



시 보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선 람	기관의 장

제107호

2015. 11. 02(월)

고 시

○ 남원시 공고 제2015-77호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(변경)인가..... 1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※ 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2

남원시 고시 제2015-77호

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(변경)인가

1. 남원시 고시 제2012-25호(2012.4.27.)로 신정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, 남원시 고시 제2013-35호(2013.5.16.)로 신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,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된 남원 신정지구(남원역 앞)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「환지계획(변경)인가를 위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2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 된 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이 변경수립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환지계획(변경) 인가 고시합니다.

가. 사업개요

- 1) 사업명 : 남원 신정지구(남원역 앞) 도시개발사업
- 2) 위치 : 남원시 신정동 29-4번지 일원(남원역 앞)
- 3) 면적 : 22,505.2m²(수용지구 9,151.4m² 환지지구 13,353.8m²)
※ 23,782m² → 22,505.2m² (감1,276.8m²)
- 4) 시행자 : 남원시장
- 5) 시행방식 : 혼용방식(수용·사용방식 + 환지방식)
- 6) 사업비 : 4,700백만원 (수용·사용방식 2,980백만원, 환지방식 1,720백만원)
- 7) 사업기간 : 도시개발구역지정일(2013. 5. 16) ~ 환지처분일

나. 인가내용

- 1) 환지계획 수립기준
- 2) 토지조서
- 3) 환지계획(변경) 관련도서

2015. 11. 02

남 원 시 장